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7
----------	----

제출년월일 : 2015.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미 근거 조례를 정비,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을 완화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 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지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 안 제2조제3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 규정 법령 조문 변경
- 안 제9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 → 폐기물관리법 제 14조제5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 관련 법령 조문 변경

나. 상위 법령 위반 및 근거 없는 규제 삭제

- 안 제18조 : 제1항, 제2항 삭제(법제처 발굴 정비과제 통보에 따른 개정)
 - 제1항 : 법 제68조의 과태료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를 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18조제1항은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음.

- 제2항 : “음식물폐기물 과태료 부과 개선기간” 상위법에 미 근거 불합리한 조항 삭제 주민 편의 제공

○ 안 제19조 : 삭제(법제처 발굴 정비과제 통보에 따른 개정)

- 조례 제18조에 의한 과태료는 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따라 부과하고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18조제1항의 삭제 이유와 같이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은 법 위반에 따른 것이지 조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 제18조제1항과 함께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5. 05. 04 ~ 2015. 05.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행정규제 저촉사항 없음 [기획감사실- 4958(2015.5.7)]
-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주민생활지원- 29295(2015.5.14)]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감사실- 5458(2015.5.22)]
-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
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라 한다) 제16조”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 6. (생략)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로 시행한다.

② ~ ④ (생략)

제18조(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

4. ~ 6.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① ---제14조제5항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

<삭 제>

<삭 제>

① (현행 제3항과 같음)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삭 제>

수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
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제38조의3 별표 8에 따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을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연락처	(033) 330 - 2340

관련 법령 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